



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

최창희 연구위원, 홍민지 연구원

- 현행 『민법』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%로 정하고 있음 (1958년 2월 민법 제정 시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)
-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.44%의 금리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%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(연 5%)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존재함
-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(개인 또는 법인)가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 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
 - 법정이율이 미래상실소득의 할인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5%의 할인율로 계산된 손해배상금의 현재가치 금액이 시장에 투자될 경우, 투자금액이 손해배상금보다 적어짐
-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 인하 및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
- 미래상실소득 할인율(법정이율)이 5%에서 3%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함
 - 월 소득 500만 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2억 6,070만 원 증가함(9억 3,141만 원 → 11억 9,211만 원, <표 2> 참조)
-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·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
 -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, 배상책임보험, 종합보험,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음
- 정부는 「민법」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(또는 점진적 인하) 여부 검토
 -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검토

1. 검토배경



- **현행 『민법』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%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임¹⁾**
 - 동 조항은 1958년 2월 민법 제정 당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
 - 최근 저금리 기조로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.44%의 금리(이하 시장금리를 1.44%로 가정)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%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음²⁾
- **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(개인 또는 법인)가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**
 -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를 변제 받아 이를 시장금리로 투자하는 것보다 법정이율 5%를 받는 것이 이익이므로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로 부리(附利)된 금액을 청구할 동기가 존재함
 - 채무 미변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억 원을 받아 1년간 1.44%로 투자해도 144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나 법정이율 5%를 받게 될 경우 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함
 -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을 경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미래상실소득 수준보다 적어짐
 -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미래에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함³⁾
 -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법정이율이 할인율로 사용됨(이하 ‘미래상실소득 할인율’)
 -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을 경우 법정이율로 할인된 미래상실소득을 시장금리로 투자해도 미래상실소득을 회복할 수 없음
- **일본과 영국은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를 결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하는 민법 개정안⁴⁾이 발의되었음**

1) 「민법」 제379조(법정이율)

2)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조;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8. 1. 8 현재 은행별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1.3~2.2% 수준임

3)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제공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투자해 미래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임

4) 「민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8098), 2017. 7. 19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;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

-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%에서 3%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⁵⁾
 -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함
- 2017년 2월 27일 영국 법무부(Ministry of Justice)는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대인사고에 적용되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2.5%에서 -0.75%로 하향 조정했음⁶⁾
-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현행 5%인 법정이율을 3%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(이하 ‘변동제’라 함)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음

■ 본고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인하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가 국내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

2. 법정이율 인하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책임에 미치는 영향

■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, 소극적 손해, 위자료로 등으로 구성됨⁷⁾

- 병원비, 간병비(개호비), 장례비, 변호사비 등 사고로 발생한 비용이 적극적 손해에 포함됨
- 피해자가 사고로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 중 손해로 인정되는 부분이 소극적 손해임
-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, 장해 발생 시 노동능력상실률,⁸⁾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됨⁹⁾

5) 일본 「民法」 제404조(法定利率) 개정안이 2017. 6. 2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임
일본 의회 입법사이트(http://www.shugiin.go.jp/internet/index.nsf/html/rippu_top.htm) 참조

6) 채원영(2017), 「영국, 인적사고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 시 마이너스 할인율 도입」, 『Kiri Weekly』, 글로벌 이슈, 보험연구원 참조

7)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(過失相計)라 함. 자세한 내용은 최창희·정인영(2015), 『국내 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: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』, 조사보고서, 보험연구원, pp. 38~40 참조

8)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피해자가 잃게 된 노동능력의 비중

9) 위자료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종운(2016), 『최신 손해배상실무』, 진원사 참조

- 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사고(이하 장해사고)¹⁰⁾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극적 손해는 <표 1>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됨¹¹⁾

〈표 1〉 소극적 손해 산정 방법

사고 유형	손해액
사망사고	소득기준 × 가동연령 ¹²⁾ 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 - 생활비
장해사고	소득기준 × 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 × 노동능력상실률

자료: 최창희·정인영(2015), pp. 38; 장종운(2016) 참조

- 소득기준은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자의 고정 수입임
- 가동연령은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함¹³⁾
 - 예를 들어 31세가 되는 시점에 사망한 직장인의 경우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정함
- 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시점부터 가동연령 상한까지 매월 1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계산된 월 소득의 현재가치임
 - 복리를 가정할 경우 월 0.4074% 이자율로 1년을 투자하면 1년 후 수익률이 5%가 됨¹⁴⁾
 - 사고로 1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현재가치계수는 11.6812임¹⁵⁾
- 소득기준에 가동연령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됨
 -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51세 직장인¹⁶⁾이 사망한 경우 6억 원($500 \times 12 \text{개월} \times 10 \text{년}$)이 아닌 3억 1,427만 원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로 산정됨¹⁷⁾
-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‘소득기준×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’의 1/3이 생활비로 공제됨
 - 이는 피해자가 생존하였다면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1/3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임
- 장해사고의 경우 ‘소득기준×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’에서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이 소극적 손해로 인정됨

10)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영구히 상실한 사고

11) 자세한 내용은 최창희·정인영(2015), 『국내 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: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』, 조사보고서, 보험연구원, pp. 38~40; 장종운(2016) 참조

12) 장종운(2016), 『최신 손해배상실무』, 진원사, p. 56 참조

13) 가동연령은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달라짐. 상세한 내용은 장종운(2016), 『최신 손해배상실무』, 진원사, Ⅱ장 참조

14) $(1.004074)^{12}=1.05$

15) $11.6812=1/(1.004074)+1/(1.004074)^2+\dots+1/(1.004074)^{12}$, 반올림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16) 사고로 10년간의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봄

17) $500 \text{만 원} \times \text{현재가치계수}(94.2813) \times \text{생활비 공제}(2/3)=3 \text{억 } 1,427 \text{만 원}$

- 미래상실소득 할인율(법정이율)이 5%에서 3%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임(〈표 2〉 참조)

〈표 2〉 할인율 인하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및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 차이

(단위: 계수, 만 원)

소득상실기간 (개월)(A)	기간별 현재가치계수		월수입 500만 원 가정 시 미래상실소득 현재가치 차이(D=500만 원×C-B)
	할인율 5% 적용 시(B)	할인율 3% 적용 시(C)	
12	11.6812	11.8098	64
120	94,2813	103,7624	4,741
240	151,5253	180,9714	14,723
360	186,2816	238,4221	26,070

주: 1) 복리식(라이프니츠식) 현재가치계수임, 3% 할인율 현재가치계수는 직접 계산, 반올림 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 발생 가능

2) 계산 방법은 장중운(2016), Ⅱ장 참조

자료: 할인율 5% 현재가치계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참조

- 소득상실기간이 짧을 경우 이율 3% 적용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증가 폭이 크지 않음
 - 기간이 12개월일 경우 할인율 5%의 현재가치계수는 11.6812이고 할인율 3%의 현재가치계수는 11.8098로 0.1286 증가함
 -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3%로 인하될 경우 64만 원 증가함¹⁸⁾
- 소득상실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정이율 인하로 인한 현재가치계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
 - 기간이 360개월일 경우 5% 할인율하에서의 현재가치계수는 186,2816이고 할인율이 3%로 인하 시 현재가치계수는 238,4221로 52,1405 증가함
 - 예를 들어,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5%인 경우 9억 3,141만 원, 3%인 경우 11억 9,211만 원으로 할인율이 5%에서 3%로 인하되면 손해배상액이 2억 6,070만 원 증가함¹⁹⁾
- 이와 같이 법정이율이 인하 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

18) $500 \times 11.8098 - 500 \times 11.6812 = 64$ 만 원

19) $500 \times 238.4221 - 500 \times 186.2816 = 2$ 억 6,070만 원

3. 영국과 일본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 사례



- 최근 영국은 대인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을 위한 적용 계리 표(이하 Ogden Table)²⁰⁾의 할인율을 2.5%에서 -0.75%로 인하하였음
 - Ogden Table은 연령, 성별, 사망률, 은퇴시점, 할인율 등을 고려해 대인사고 피해자의 미래상실 소득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표임
 - 한국의 복리(라이프니츠) 계수표 또는 단리(호프만) 계수표와 유사한 기능을 함
 - Ogden Table의 할인율은 법²¹⁾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무장관이 정하는데 2017년 2월 27일 영국 법무부는 기존 2.5%인 할인율을 -0.75%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음(2017. 3. 20 시행)
 - 새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만기 5년 이상인 영국 물가연동채²²⁾ 실질수익률의 3년간 단순평균으로 산정된 것으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된 것임²³⁾
 - 할인율이 낮을수록 대인사고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지고 할인율이 음수가 될 경우 할인된 미래상실소득이 '기준소득×소득상실시간'보다 커져 할인이 아닌 할증이 이루어짐
 - Kollewe(2017)²⁴⁾는 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예를 들어 과거 300만 파운드(43억 2천만 원)이었던 손해배상금이 800만 파운드(115억 2천만 원)로 2.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²⁵⁾
- 영국 보험회사들은 Ogden Table의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음
 - A.M. Best(2017)²⁶⁾는 큰 폭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부적절한 요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단기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음

20) 공식 명칭은 “Actuarial Tables with explanatory notes for use in Personal Injury and Fatal Accident Cases”이나 통상 1~4판까지의 작성 책임자 ‘Sir Michael Ogden’의 이름을 따 간단히 ‘Ogden Table’이라 함

21) Section 1 of Damages Act 1996

22) ILGs: Index Linked Gilts

23) 채원영(2017), 「영국, 인적사고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 시 마이너스 할인율 도입」, 『Kiri Weekly』, 글로벌 이슈, 보험연구원 참조

24) Julia Kollewe(2017. 9. 7), “UK insurance payouts to shrink after U-turn on lump sum formula”, Article, The Guardian

25) 1 파운드(GBP) = 1,440원으로 환산

26) A.M. Best(2017), “A.M. Best Briefing: Reserve Strengthening to Follow U.K. Personal Injury Discount Rate Change”, Article

- 2015년 현재 영국의 자동차보험 총 보험료는 139억 파운드(20조 원) 규모이고 합산비율²⁷⁾은 102%로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²⁸⁾
- Kollewe(2017)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을 인하여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100파운드(14만 4천 원), 젊은 운전자의 경우 300~500파운드(43만 2천 원~72만 원)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
- 또한 A.M. Best(2017)는 큰 폭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을 인하여 대인사고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음

■ 영국 법무부는 큰 폭의 할인을 인하여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-0.75%로 조정된 할인을 0~1%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음²⁹⁾

■ 2017년 법정이율 인하를 결정한 일본도 미래상실소득 할인을 인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음

-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을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로 활용하고 있음(일본 「민법」 제404조)
- 일본 언론³⁰⁾과 보험회사³¹⁾는 법정이율 인하 시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
 - 일본 보험뉴스는 현행 5% 할인율에서 5,559만 엔(5억 2천 477만 원³²⁾)인 손해배상금이 3% 할인을 적용 시 7,489만 엔(7억 700만 원)으로 34.7% 증가하는 예를 들어 할인을 인하의 영향을 설명했음
 - 또한 법정이율 인하 시 자동차보험의 약관 개정이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지연 손해배상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하여 설명했음

27) 합산비율 = 손해율 + 사업비율, 합산비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보험영업 손실이 발생함

28) Deloitte UK(2016), "Motor insurance premiums rise to £13.9bn in 2015, but headline net combined ratio (NCR) increases to 102%"

29) Baroness Vere of Norbiton(2017), "Justice update: Written statement - HLWS121", U. K. Parliament

30) 일본 保険ニュース(2017. 6. 7), "民法(債権法)改正案が国会で成立 損害賠償額算定実務に大きな影響 中間利息控除の利率 3%へ", 日本経済新聞(2017. 5. 15), "法定利率 変動制に 車保険料上昇の可能性" 참조

31) 波多江健(2013), 損害保険にかかわる債権法の論点,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

32) 일본 엔, 1엔 = 9.44원으로 환산

4. 시사점



- **법정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더불어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이 필요함**
 - 법정이율이 현재와 같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대인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로 자신에게 발생한 미래상실소득보다 적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
 -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법정이율 인하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고,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Ogden Table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
 - 우리나라도 대인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상실소득 할인율(법정이율)을 시장금리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

- **법정이율 인하 및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과 함께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**
 -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할인율 인하로 인해 관련 보험(특히 자동차보험)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
 -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회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³³⁾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

- **정부는 「민법」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의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**
 -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
 - 또는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

33)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입원 상태인 경우

-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
 -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7-78조(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)은 법개정으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인 보험료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[kiri](#)